





배포일시	2017.8.19.(토)	보도시점	배포 즉시
담당과장	기획협력과장 김영돈	연 락 처	053-712-1040/010-8647-4166
담 당	기획협력과 소방경 오세윤	연 락 처	053-712-1005/010-8909-0119
쪽수/붙임	2쪽/없음	대변인실	044-205-7016/010-9178-9857

## 「소방헬기 살 900억원은 있으면서 초과근무수당은 미지급」보도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.

□ 보도내용	('17.8.18.(금)	19:30,	MBN)
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	------

〈보	두	요	지	
\ <del></del>	_			

- 시·도 소방공무원 소송결과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 했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음
- '18년 예산 요구 자료에는 밀린 초과근무수당 요구항목이 없음

## □ 사실은 이렇습니다.

- 2009년 12월 「당사자 합의서/(청장 수결)」에 따르면
  - 시·도 소송 최초 확정판결 이후 지난 3년간('06년~'09년) 미지급분을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합의(당시 대장↔직원 대표) 하였음.
  - 제주소방공무원 1심판결 승소('11.5월)를 근거로 '12년 10월 기획 재정부에 예비비를 신청하였으나,
  - 중앙119구조본부는 국가기관으로서 타 유사기관(경찰, 교도관)에 파급효과를 고려, '법원 최종 확정판결 후 지급'의견으로 미반영됨.
    - \* '13년과 '14년에도 예비비 및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으나, 기획재정부에서 미 반영

- 현재까지 유사기관(경찰, 교도관) 및 시·도 소방공무원의 '법원 최종 확정판결'사례가 없어 '14년 이후 예산편성 요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임.
- 향후 대법원 최종확정 판결 즉시 기획재정부에 예비비 또는 예산 편성 요구 후 미지급액 전액을 지급할 예정임.

